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1-1972호

매매참가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참인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참가인 처분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대상자 인적사항

주 거래도매법인	성 명	생년월일	사 유	비고
부산청과(주)	김광호	1981.04.22.	6개월(2020년도 11월~2021.4월분) 연속무실적	신고 취소 처분 예정

2. 사　　유 : 6개월(2020.11월~2021.4월) 연속무실적

3. 통지내용 : 6개월 연속무실적 매매참가인 행정처분(신고 취소)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

○ 의견제출 기한 : 2021. 6. 24.

4. 법적근거 :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,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5조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매매참가인 관리 및 운영지침 제9조

5.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사항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(☎ 310-82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의견제출서 1부. 끝.

2021. 6. 9.

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

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인

운영팀 / 이상성 / 2021-06-09 14:34:33

■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[별지 제11호서식] <개정 2014.7.28>

의 견 제 출 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	
	주소	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	
	당사자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의 견		
	기 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운영팀 / 이상성 / 2021-06-09 14:30:26